

「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」 전산 화면 변경 안내문

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4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26조에 의거하여 급여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이에 변경된 「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」 전산 화면을 안내하오니, '정보게시 매뉴얼'을 참고하시어 수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경로 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> 요양자원 > 장기요양기관 관리 >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

▶ 변경사항 : ① 급여유형별 정보게시율 조회

② 급여유형별 프로그램운영 정보 등록 ... 필히 수정 입력 필요

※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·주야간보호·단기보호기관의 기존 입력 데이터를 상위 급여종류로 데이터 일괄 이동

③ 계약의사 현황(탭), 협약기관 현황(탭) 위치 이동

홈페이지 미가입 기관	홈페이지 가입 기관
① 홈페이지 가입 ② <u>급여종류별</u> 정보 입력 필요	① (미게시 항목) 해당정보 입력 필요 ② (게시항목) 현재 변경된 정보가 있는 경우와 <u>프로그램운영 정보</u> 를 입력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 입력 필요 ※ 급여종류별 게시항목은 매뉴얼 참고
▶ 정보게시는 급여종류별 입력이 원칙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실과 치매전담실가형, 나형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, 주·야간보호의 경우에도 일반실과 주·야간보호내치매전담실 각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▶ 「정보게시 매뉴얼」 확인 경로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자료실 > 전문자료실

③ 장기요양정보시스템 > 기타 > 게시판 > 공지사항

※ 신설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지체 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5.

국민건강보험공단